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난 민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000 (법무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난민불인정결정 또는 난민인정 취소·철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인 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,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전자적 형태의 이의신청 접수사실 통보 근거 마련(안 제9조의2)
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
- 나.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의신청 근거 마련(안 제9조의3)
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와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
- 다.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및 송달 근거 마련(안 제9조의4)
이의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난민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통지 및 송달할 수 있도록 함

라.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 근거 마련(안 제11조)

부적법한 이의신청은 각하 결정하고, 이의신청 기각·각하결정
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

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난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.

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3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의신청)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와 그 밖의 자료(이하 이 조에서 “이의신청서등”이라 한다)를 제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등이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.

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서등이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출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이의신청서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의하여 제출요구를 받은 이의신청서등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이의신청서등으로 보지 아니한다.

제9조의4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)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(이하 “이의신청인”이라 한다)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통지 및 송달(이하 “통지등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등을 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보통신망에 등록할 경우,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 등을 통하여 이의신청인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.

④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서류를 확인한 때에 그 통지등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2항에 따라 그 등록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록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.

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.

1.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난민인정결정을 한다.
2.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.
3.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제1항”을 “법무부장관은 제1항”으로, “난민인정증명서”를 “결정을 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민인정증명서”로, “기각결정통지서는”을 “기각·각하결정통지서를”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항제1호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을 하는 경우 : 난민인정증명서
2.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: 이의신청 기각·각하결정통지서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의2(이의신청 접수증 발급)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 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 해야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제9조의2(이의신청 접수증 발급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제9조의3제1항에</u> <u>따라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</u> <u>보통신망을 통해 이의신청서를</u> <u>제출받은 때에는 그 접수사실을</u> <u>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9조의3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</u> <u>의신청) ① 법 제21조제1항에</u> <u>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</u> <u>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통</u> <u>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와</u> <u>그 밖의 자료(이하 이 조에서</u> <u>“이의신청서등”이라 한다)를 제</u> <u>출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등</u> <u>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</u> <u>관에게 이의신청서등이 전송된</u> <u>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</u> <u>로 본다.</u>

<신 설>

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서등이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출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이의신청서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의하여 제출요구를 받은 이의신청서등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이의신청서등으로 보지 아니한다.

제9조의4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)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(이하 “이의신청인”이라 한다)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통지 및 송달(이하 “통지등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등을 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보통신망에 등록할 경우,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 등

제11조(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)

①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난민인정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며,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한다.

을 통하여 이의신청인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.

④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서류를 확인한 때에 그 통지등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2항에 따라 그 등록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록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.

제11조(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)

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.

1.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난민인정결정을 한다.
2.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.

② (생 략) ③ 제1항에 따른 <u>난민인정증명서</u> 및 <u>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</u>는 청장, 사무소장,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송달한다.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3. <u>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----결정을 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<u>난민인정증명서</u> --- <u>기각·각하결정통지서</u> ----- ----- -----. 1. 제1항제1호에 따라 난민인정 결정을 하는 경우 : <u>난민인정증명서</u> 2.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<u>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: 이의신청 기각·각하결정통지서</u>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난민심의회	
연 락 처	(02) 2110-4158